경영유의사항 · 개선사항 공개안

Ⅰ. 금융회사명 : DGB생명보험주식회사

Ⅱ. 조치일 : 2023. 5. 26.

Ⅲ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2건

Ⅳ. 조치대상사실

1. 경영유의사항

가.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

회사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관련하여 내부 의사결정 절차 및 리스크관리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향후 관련 업무가 철저히 수행되도록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처리 기준,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1) 채권재분류 의사결정 과정

2020.5월 RBC비율 제고와 신지급여력비율(K-ICS) 도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재분류(이하 '채권재분류')하면서

2020.5.15. 작성한 '채권재분류 영향 검토' 보고서에는 채권재분류를 통해 가용자본(기타포괄손익누계액 채권평가이익)이 증가하여 RBC비율이 개선될 수 있고, 금리 추가 하락 시 RBC비율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나,

금리변화에 따른 가용자본 변동성 증가로 금리상승 시 RBC비율이 150%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기재하였을 뿐, 이로 인한 리스크 확대 및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세부 검토는 미흡하였음

또한, 2020.5.29. 임시이사회 보고안건 본문에는 RBC비율 개선, IFRS17 시행 전 ALM 관리 등 채권재분류로 인한 기대효과만 명시되어 있을 뿐, 이로 인한 위험요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, 그 결과 참석 이사들도 별다른 논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음

한편, 전사 차원에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,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, 2020.5.29. 채권재분류 결정 시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음

(2) 사후관리

2020.5월 DGB금융지주가 회사의 채권재분류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채권재분류 후 금리상승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, 회사는 이를 비상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,

2021년부터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회사의 RBC비율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자산·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한 금리위험액 감소 등의 조치만 취하였을 뿐, 향후 금리수준에 따른 RBC비율 하락 수준과 그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, 세부 실행계획(자본확충 방법 등)을 마련하지 않았으며,

2021.12월 차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금리상승이 예상되었음에도 금리변동성을 감안하지 않고 2022.12월말 목표 RBC비율을 215.6%로 설정하였고, RBC비율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음

나. 지급여력비율 산출 업무 철저 필요

회사는 RBC비율 산출시 익스포저, 신용등급, 위험계수 등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검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2022.10월말 기준 RBC비율 산출 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RBC비율 산출 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

(1) 신용위험액 산출 관련

외화채권 및 후순위채권의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면서 일부 외화채권 및 후순위채권의 신용등급 또는 위험계수를 잘못 입력하여 매도가능증권의 신용위험액을 4.0억원 과소 계상하고, 수익증권의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면서 과거 시점(2022.6월말 등)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 및 난외항목의 신용위험액을 3.7억원 과소 계상

(2) 시장위험액 산출 관련

단기환헤지포지션을 산출하면서 단기환헤지포지션 익스포저 값을 2022.6월말 값으로 잘못 입력하여 시장위험액을 8.5억원 과소 계상하고,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계산하면서 보증준비금 산출 시 사용하는 할인율을 잘못 적용하여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142.0억원 과소 계상

(3) 운영위험액 산출 관련

운영위험액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수입보험료에 위험계수 1%를 곱하여 산출하는데, 2022.10월말 기준 수입보험료 산출 시 단체보험에 대한 수입보험료를 누락하여 운영위험액을 2.6백만원 과소 계상

(4) 지급여력금액 변동 관련

변액보증준비금을 83.7억원 과소 계상함에 따라 기본자본의 하위 항목인 이익잉여금을 83.7억원 과대 계상하여, 지급여력금액을 크게 책정하는 결과 초래